

화재보험범죄 일반

대한손해보험협회 김 영 복

□ 서설

보험은 사고에 따른 손해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장치이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으로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추진장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지닌다.

이에 따라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경제제도라는 찬사를 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보험범죄와 더불어 발전해 온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이미 세계 6위권에 이르고 있고 국민 총생산에의 기여도가 무려 13%에 달할 만큼 중요한 금융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보험범죄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최근에는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하는 계층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전 사회에 만연되는 경향을 띠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하여 손해보험에서만 매년 지급되는 전체 보험금의 약 10%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액수이다.

이는 결국 보험의 기본원칙인 收支相等의 原則에 의거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고 따라서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이 지게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보험회사의 경영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보험금을 더 타내는 것이 마치 삶의 한 요령이나 된 듯 생각 하는 잘못된 의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은 사회전반에 배금주의 풍토와 물질

만능주의라는 병폐를 초래하게 되어 다른 범죄 발생율의 증가와 함께 국가경제에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와 구체적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 또는 각 보험사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보험범죄 일반

1. 정 의

보험범죄함은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 급부를 댓가 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 급부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2.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보험사기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미수 포함)를 말하며 실무 상으로는 통상 보험범죄와 혼용하여 사용하나 두 가지 용어는 엄밀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고사를 가장한 살인을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청구 전 검거되었다면 사기의 착수행위(지급 청구)가 없으므로 보험사기라 할 수 없으나 동 살인의 목적이 보험금이었으므로 이를 보험범죄로 칭하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의 원인된 위법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3. 보험사고

보험사고라함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우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고”를 말한다. 보험제도 자체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위험 없으면 보험 없다(No Risk, No Insurance)”라는 보험학 상의 원칙과 같이 이러한 보험사고를 “위험”이라고 하기도 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된다.

가.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사고는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야 하지만 그 발생과 시기 및 태양은 불확정적이어야 한다. 다만 사망 보험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이 반드시 객관적일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당시에 당사자들이 모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주관적으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보험사고는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보험사고는 계약 당사자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는 없지만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화재나 교통사고는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어느 정도 발생을 줄일 수는 있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사망과 같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있다. 또한 보험사고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다. 보험사고는 한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보험사고는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라야 한다. 즉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그 사고의 범위는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보험범죄의 성립 요건

보험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죄(제347조)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의 요건만 충족시키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되면 성립하고 보험사기를 위해 다른 범죄를 범하였다면(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등) 동 범죄는 사기죄와 경합범(살인 및 사기)으로 성립한다.

5. 역 사

“一人은 萬人을 위하여, 萬人은 一人을 위하여”라는 정신을 지니고 있는 보험제도는 그 공익성과 효용도로 인해 흔히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경제제도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일확천금의 환상과 범죄실행의 용이성으로 인해 보험은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보험범죄라는 어두운 측면과 그 역사를 같이 해왔다.

1) 최초의 보험범죄

기록상 나타나 있는 세계 최초의 보험범죄는 1762년 영국의 “이네스”사건으로서 이네스라는 자가 양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그녀를 독살하고 자신을 유산 상속자로 하는 유서를 위조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2)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사기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는 1921년에 설립(조선생명보험)되었는데 그 3년 후인 1924년에 보험범죄가 최초로 매일신보에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이라는 제하로 보도되고 있다.

내용은 보험을 가입해 놓은 후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 하였다가 적발된 것이며 기록상 나타나는 최초의 보험금 목적 살인은 1975년 1월의 “박 분례 사건”이 최초로서 언니, 형부, 조카를 방화 살인하고 시동생을 우유로 독살한 후 총 14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체포된 것이 최초이다.

6. 구 분

실무 상 보험범죄는 보험사기와 혼용하는 개념으로서 대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경성 사기 (Hard Fraud)

보험금 지급요건이 되는 재해, 상해, 도난, 방화, 기타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각색 또는 조작한 후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형법법상 사기죄 +기타 죄).

2) 연성 사기 (Soft Fraud)

합법적인 청구를 과장, 확대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청구하거나 갱신할 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낮은 보험료를 낸다든지 거절체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인수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사기죄), 기회사기(Opportunity Fraud)라고도 한다.

7. 특 징

1) “저위험 고소득(Low risk - High return)”

보험사기는 대체로 발각되어도 경미하게 처벌되거나 관되는 데 일반인이면 누구나 한번쯤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에 대해 부정적이고, 보험사는 영업중심의 정책 마인드 때문에 조용하게 처리되기를 원하는 풍토 하에서 저위험, 고소득 특징이 기인된다.

2) 혐의 입증의 난해성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고의에 의해 재산적 이득을 얻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중대한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각 보험사등의 이기주의, 상해진단의 주관성, 전문수사 인력의 부재, 신고율 저하, 신고자 보상 및 보호체제의 미미함도 혐의 입증을 난해하게 한다.

3) 지능적 범죄와 생계형 범죄의 공존

보험사기는 지능적 범죄로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 공동범행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형태와 함께 우발적이고 단독범이며 단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가 공존한다.

4) 보상성 심리와 동조 의식 존재

보험사기는 위험보장이라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소멸성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대기업인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모방과 동조 의식이 존재한다.

5) 사기폐해의 간접성, 광범위성

보험사기는 의견상 보험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에 의거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므로 결국 피해주체의 전이, 즉 피해당사자가 현재의 계약자가 아닌 미래의 계약자로 전이된다.

6) 범죄의 복합성, 다양성

다른 범죄의 결과로서 보험사기가 이용되기도 하지만 보험사기를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범죄의 형태도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성을 띠고 있다.

7) 내부종사자의 공모등

보험사기는 보상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사의 생리와 보상절차에 대하여 밝은 모집종사자등 내부인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또한 각 보험사의 인력구조조정 은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를 약화시켜 범죄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8. 보험사기 범죄자의 특징

- 1)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 2) 단독범보다 공범관계가 많다
- 3) 기밀유지가 쉬운 특수관계(친, 인척 등)가 많다
- 4) 금전 소유욕이 강하며 경제적 궁핍 등 자기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 5) 중독적 성향을 띤다
- 6) 안정적 직업이 없거나 소득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다
- 7)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9. 폐 해

- 1) 보험제도 존립기반의 위협
- 2) 범죄의 모방 및 등조 양산
- 3) 인명 피해 및 물질 자원 낭비
- 4) 사회적 불안 가중
- 5) 보험 이미지 악화
- 6) 준법의식 약화

10. 유형

- 1) 교통 사고 관련
- 2) 차량 등 도난 관련
- 3) 병·의원 관련(의료 비리)
- 4) 살인, 방화 등 일반범죄 관련
- 5) 외제 차량·오토바이 관련
- 6) 화재 등 신체상해 관련
- 7) 안전사고, 산업재해 관련
- 8) 고의침몰 등 선박, 항공기 관련

□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험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을 그 수단으로 이용

하거나 조직폭력배가 조직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등 그 양상도 점차 폭력화, 조직화, 포악화 경향을 띄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차 다양화되면서 전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추세이다.

-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적발건수	2,612	3,683	4,622	5,488	5,757	8,697
관련금액	23,983	34,744	25,256	34,791	41,132	52,909

- 적발건수 : 년 평균 25.0 %

- 관련금액 : 년 평균 13 % 증가

* 금융감독원 공식발표 통계로서 손·생보를 모두 망라한 것이며 수사기관 입건 이전 청구포기, 면책 건까지 포함된 수치임.

이른바 “고요한 대재앙(The Quiet Catastrophe)”으로 까지 불리우는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손실비용을 지급 보험금의 10%로 추정할 때 최소 년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단순한 보험사의 경제적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만연됨으로써 국민들의 준범의식을 마비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등 이로 인한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 국가별 손실 추정 비율(%)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한국(추산)
15	10	6	3.7	1.0	10

주) '98년 5월 영국 CII Journal 제공 자료 참고

* 국가별 손실 추정 비용(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추산)
24조	3.2조	1.4조	1조	1.0조

* 보험범죄의 암수(暗數)와 발생 규모

보험범죄는 전체 발생 규모나 이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보험범죄가 범죄학 상의 암수가 많은 경제범죄의 일종이므로 특징상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사기관에 사기로 입건되는 수치는 파악이 가능하나 발생하는 사기의 전체 건수를 작은 오차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수”를 고려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추정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일반적으로 암수는 이미 행하여진 모든 범죄와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사이의 격차를 말하며 이는 범죄 종류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살인과 같은 일반 강력범죄와는 달리 경제범에는 이러한 암수범죄(파악되지 않은 범죄)가 특히 많은 특징을 지닌다.

□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I. 규정

가. 보험통칙 상(保險通則 上)

1. 보험자애의 승낙권 부여(商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제①항)

보험계약은 계약일반론 원칙과는 달리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하고 그 승낙여부는 보험자가 30일 이내에 가부를 통지하므로써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2. 승낙 전 보험보호에 있어 단서조항(商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제③항)

보험계약 성립에 있어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승낙 전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외 효과(商法 제 644조 객관적 확정외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소급 효과의 금지).

4. 계약자의 고지의무 제도(商法 제 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제도(商法 제 652조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 ①항)
성립된 보험계약 이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대한 때에는 보험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자의 통지의무제도(商法 제 657조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제 ①항)
보험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 즉시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자의 조사협조 의무제도(商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③항)
보험사고 조사에 관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요구를 하면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에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損害保險에 있어 대책

1. 피보험 이익의 적법성 요구(民法 제 103조)
적법치 못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당연히 무효다.
2. 초과보험의 처리제도(商法 제 699조 초과보험 제 ①항 및 제 ④항)
계약자가 보험가액을 과다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도 손해액 이상의 보상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중복초과보험(다수의 보험사와 초과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역선택(逆選擇)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

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보험범죄를 모색하는 예비 범죄자는 과다하게 역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범죄의 조사에 있어 역선택 여부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3. 보험대위 제도(商法 제 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제 682조 제 3자에 대한 保險代位)
보험목적에 대해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현물보상 제도(자동차보험 약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점검권
2003년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상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업무에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점검을 명문화한 것도 이들 업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위(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험범죄의 일종이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人保險에 있어 대책

1.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한 동의제도(商法제 731조 타인의 생명보험 제①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시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15세 미만자 등의 생명보험 계약 해지제도(商法 제732 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 상해보험 최대보험금액 상한제도(계약심사 상)
상해보험에 있어 최대 보험금액을 각 사 자율로 일정액 이하로 상한선을 둔 것도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통상 사망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하)

II. 문제점

가. 법규상 문제점

현 법규(保險業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商法, 民法

等)는 보험범죄 방지와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충돌되는 경우 소비자 또는 약자보호 차원에서 계약자의 권리실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犯意를 야기케 하는 측면이 많다.

또한 보험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활동의 준거가 되는 법규가 없다.

나. 실무상 문제점

보험사의 영업 목적만을 중시한 이미지 관리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탄력적 보험금 지급방식, 심층조사 회피, 불량물건 인수 등 보험범죄의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가 파생된다

다. 정서적 문제점

배금주의의 풍도 하에 보험범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이 거대자본인 보험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삶의 한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적 정서가 보험범죄를 부추킨다

라. 관행적 문제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래원하면 여하한 의학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허위 통증호소만을 이유로 염좌 등의 상 병명의 진단을 발급해 주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묵인하고 있는 일부 의사 또는 비정부품을 사용하거나 수리치 않거나 순정부품을 사용 수리한 것으로 허위청구하는 일부 정비공장의 관행적 행위도 보험범죄의 한 축이 되고 있다

※ 년도별 병·의원 환자 부재율

년도별	'99	'00	'01	'02	'03	평균
부재율(%)	12.7	16.0	21.0	17.5	19.6	14.8

주) 손해보험협회 자체집검 결과임

※ 자동차 정비업소 부당청구 실태

구 분	FY 02	FY 03
부당청구 차량비율	64.8%	68.2%
부당청구 금액비율	14.0%	14.9%

□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

I. 금융감독원(보험검사국 보험조사실)

2001년도에 보험검사국 내에 보험범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및 조사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보험업법 제182조에 의한 관계자에 대한 제한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1실 3팀).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 보험계약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II. 대한손해보험협회

- 보험범죄방지센터
- 보험범죄 특별조사반
- 보험범죄 방지대책 위원회
- 보험범죄 아카데미

III. 각 보험사

-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 조사지원팀, 계약 및 지급 심사팀

IV. 손해사정인

제 1종(화재, 특종), 2종(해상, 항공, 운송), 3종(자동차 대인·대물, 대인, 대물) 손해사정인

※ 경찰 : 보험범죄를 경제사범으로 분류 경찰청 지능범죄과에서 총괄하며 01년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 보험범죄전담수사반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외국의 보험범죄 방지대책 기구

I. 미국

○전미 보험범죄 방지국(NICB)

- 92년도 설립 민간기구
- 02년 현재 1,000여개 손보사, 자가 보험사 가입
- FBI 및 경찰출신 약 450명
- 제한된 조사권 부여

○보험사기국(IFB)

- 뉴욕주 보험청내 공무원 기구
- FBI,경찰 6년 이상 경력자 40여명
- 준사법권 부여

II. 영국

○범죄 및 사기방지국(CFPB)

○보험사기 방지 관리소(CUE)

Ⅲ. 일본

- 생보 리서치 센터
- 생보 경찰연락협의회
- 손해보험방법대책협의회(경찰 출신 약 100명)

국 가	기관명	주요업무	비 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감독청, 보험사기국(IFB) - 미국 보험자협회(ISO) -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관련 정책수립 및 법규제정 - 보험사기정보의 조회·검색 - 보험범죄 조사 및 수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각주 권고) - 보험범죄정보관리 및 전산망구축 - 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임의단체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보험자협회(ABI) - 보험범죄및사기방지국(CFPB) - 보험사기방지관리소(C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범죄 조사 및 수사 지원 - 보험사기정보 조회·검색 - 보험범죄 예방홍보 - 보험범죄조사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범죄신고센터 운영(Hot-Line) - 정부기관보유정보 협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방법대책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범죄조사 및 수사 지원 - 관련기관협조체제구축 (경찰, 소방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인보험사고 정보 교환시스템 운영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보험협회(FFSA) - 보험사기국(AL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범죄연구소운영 - 보험범죄사기정보조회검색 - 보험범죄예방홍보 - 보험범죄조사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간 전산망 증계 및 자료교환 (Bulletin Board)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보험협회(GDV) - 보험정보중앙데이터뱅크(C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범죄조사및수사지원 - 보험사기정보조회·검색 - 보험범죄신고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지표 개발보급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보험사연합(UPEA) - 보험사기위원회(F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범죄아카데미 운영 - 보험사기정보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정보 교류 자율 협약 체결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보험협회(UNESPA) - 보험범죄방지국(CPI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범죄 조사 및 수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민·관 공조 체제구축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보험협회(ISVAP) - 보험사기방지서비스(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범죄 조사 및 수사지원 - 보험범죄 예방 홍보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 공조 수사 체계 구축